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곽 선 혜\* · 이 성 욱\*\*

목 차	
요약	5.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1. 서론	5.1 정보조작대처법의 입법배경
2. 가짜뉴스의 역사	5.2 정보조작대처법의 특징과 시사점
3.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6.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
4. 가짜뉴스의 확산배경	6.1 입법 논의의 한계
4.1 기술 환경의 변화	6.2 가짜뉴스 규제와 표현의 자유
4.2 언론의 상업주의와 생태학적 현상	7. 결론
4.3 확산편향과 여과거품	참고문헌
	Abstract

## 요약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표제어: 가짜뉴스, 정보조작대처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접수일(2022년 8월 15일), 수정일(1차: 2022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23일)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sunhye.kwak@halla.ac.kr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leesw@halla.ac.kr

## 1. 서론

가짜뉴스는 21세기에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의 과정에서도 방역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거나 서버를 만드는 형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검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촉구될 만큼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시작만큼이나 오래 되었고, 인류역사와 늘 함께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같은 조작이 더욱 용이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등을 통한 빠른 전파력 때문에 그 영향력과 피해가 증대되었을 뿐이다.

2018년 1월, EU의 집행위원회는 HLEG(the High Level Expert Group)라는 고위전문가자문 기구를 만들어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HLEG가 발행한 보고서(2018)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공적이고 사적 ‘검열’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2018년 8월, 정부가 허위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가짜뉴스 처벌법”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2018년 11월, 프랑스 상원에 의해 2번 연속 거부됐던 법안들이 긴 진통 끝에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진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은 선거기간 동안 투표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가 고의로, 대량으로 유포된 경우, 판사가 명령으로 이를 중

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허위정보의 유포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Min-Jeong, Kim., 2018).

국내언론은 독일에 이어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의 가짜뉴스 규제법’, ‘유럽의 가짜뉴스 퇴치법’ 등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보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의 성격을 잘못 전달하거나 좀 더 숙의가 필요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한국의 현 규제상황과 제대로 비교하지 않은 단순보도가 많았다.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전달과 국내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충분한 맥락과 배경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역사,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 확산 배경을 고찰하고,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의 내용들을 검토해, 이를 둘러싼 주요 논란과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이 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가짜뉴스의 역사

사실 가짜뉴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Bendall & Robertson(2018)은 가짜정보 확산이 최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 20세기 PR, 세계대전에서 심리전, 미디어 왜곡 등 오랜 시간 권력자에 의해 이뤄진 역사성을 떠내고 설명한다. 거슬러 올라가 3,500여 년 전, 모세에 의해 기록된 성서 첫 장 ‘창세기’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은 ‘사탄

(Satan)’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와에게 전달된 사탄의 이야기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그야말로 가짜뉴스였다. 성서에 의하면, 그 폐해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속된다.

국내에서도 신라 진평왕 때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일본 내무성의 경찰 통신망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에서 비롯되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보여준 파급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공유나 댓글은 각각 96만 건, 79만 건에 달했다.

어쩌면 ‘뉴스’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 가짜뉴스 역시 함께 탄생했는지 모른다. 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도 가짜뉴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 인쇄술의 등장으로 뉴스가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고, 가짜뉴스도 넘쳐났다. 그 당시에는 언론의 윤리라든가 객관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뉴스가 가짜이고, 진짜인지 구분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론의 역사에서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가짜뉴스가 어떤 사실을 믿게 할 의지가 있다면, 가짜뉴스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자극들은 점점 더 실제적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이 문제다.

### 3.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가짜뉴스의 사회적 논란이 커져가지만,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Jung-Yoon, Se-Hoon, 2018; Ahran, 2019). 가짜뉴스는 허위보

도나 하위정보, 날조보도, 오보, 의도된 가짜정보, 혐의의 페이크, 가짜정보, 잘못된 정보와 유사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풍자적 뉴스, 지라시, 프로파간다, 유언비어, 괴담, 루머, 풍자 등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좁히지 못하면 비생산적인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짜(fake)라는 용어는 복제(copy), 위조(forgery), 변조(counterfeit), 모조(inauthentic)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Andrea, 2016). 최근에 논의되는 가짜뉴스의 통념적인 개념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는 ‘불확실한 사실’ 또는 ‘허위정보’의 범주에서 다뤄진다. 목적과 의도를 가짜뉴스의 요건으로 삼는다면,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내용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자 만든 뉴스 형태의 내용물”(Jae-Gook, 2018)이라는 정의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자들은 가짜뉴스를 형식의 모방 정도와 함께 뉴스 내용의 진실성, 목적의 의도성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Jung-Yoon과 Se-Hoon(2018)은 가짜뉴스를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측면에서 실제 뉴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Chang-geun(2017)도 가짜뉴스를 “뉴스의 형식을 빌려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Yong-seok(2017)은 ‘잘못된 정보’와 ‘의도된 가짜정보’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가짜뉴스가 애초에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가, 의도성은 없었으나 잘못 확인한 정보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Sae-Wook 등(2017)도 언론사의 오보는 기사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인을 전달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빚어진 실수 또는 잘못이기에 기만할 목적이 없으면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목적성과 의도성이 개념 요소일 경우 가짜뉴스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고의이든 과실이든 허위사실이라면 모두 가짜뉴스로 간주함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Sung-Oak, 2018). 허위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민 것, 객관적 사실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날조한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법 적용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항상 명백한 개념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Gap-Un, 2017).

더 나아가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Jong-seob, 2017). 가짜 냉장고, 가짜 아파트가 없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존재론적으로 개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스가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뉴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이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뉴스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정적이고 독점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독자·시청자·청취자·인터넷 방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들이 개입하면서 수정되고 발전하는 동적 형태의 콘텐츠이며, 뉴스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바라보는 견해다.

한편, 2018년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는 해외사례가 소개되면서(Sun-Ho, 2018; Ahran, 2019 등),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Min-Jeong, Kim., 2019), 가짜뉴스를 대신할 용어로 오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여 사용하자는 논의(Min-Jeong, Kim., 2019) 등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오정보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은 아닌 반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 특정 단체, 혹은 특정 국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것

을 말한다(Min-Jeong, Kim., 2019; Wardle & Derakhshan, 2017).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의는 의사표현의 자유, 자율규제,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크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가짜뉴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 봐야 한다. Klein & Wueller(2017)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관점(fake news: a legal perspective)’이라는 연구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기준으로 의도된 허위성(falsity)과 뉴스의 형식성(formality)을 제안했다(Wansoo, 2018). 실체적 진실 여부와 뉴스의 보편적 양식을 갖췄는지를 가짜뉴스 판단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Euisun(2018)도 가짜뉴스가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가지려면, 사실의 허위성 여부,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피해 등의 3가지를 꼽았다.

## 4. 가짜뉴스의 확산 배경

### 4.1 기술 환경의 변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가짜뉴스는 용어만으로 보면 저널리즘 현상 같지만, 실제로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공유 및 댓글 숫자로 나타나는 일종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이는 가짜뉴스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일종의 정치·사회적 지지 행동 또는 집단행동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매체의 네트워크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Yong-seok, Oh-sung, 2017).

광범위성, 전파성 등 네트워크의 속성이 가짜뉴스를 급속도로 전파시킨다.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매체환경에

서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는 이동성(mobility)과 모듈성(modularity),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deep remixability) 등의 특성을 갖는다(Jae-Gook, 2018).

가짜뉴스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등장 때문이다(Jung-Yoon, Se-Hoon, 2018). Allcott & Gentzkow(2017)는 가짜뉴스의 태생적 배경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꼽는다. 허위정보는 대부분 소셜미디어, 팟캐스팅 등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Euisun, 2018). 가짜뉴스 접촉경로 76% 이상이 포털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조사결과는 가짜뉴스가 새로운 기술환경인 소셜 플랫폼에서 주로 생산되어 전파된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Il-Seok, Seong-Woo, Woon-Gab, 2018). 가짜뉴스는 미디어의 기술변화에 따라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비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시장질서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Euisun, 2018). June-Woong(2017)도 최근 유통 플랫폼 환경변화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라 지적한다. Yong-seok(2017)은 가짜뉴스는 소셜 미디어라는 기술 환경에서 등장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누구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해진 미디어 플랫폼과 발달된 기술을 통해 거짓을 진짜처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뉴스의 진실과 허위 구분을 점점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단순한 흥미나 오락의 수단으로 쓰일 때는 휘발성 높은 콘텐츠에 불과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진짜로 둔갑하는 순간 사회적 위험거리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는 단순한 오보나 패러디, 풍자, 과장보도와 같이

‘사실일수도’ 또는 ‘재미로’ 라는 가정이나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Hong-Kyu, 2017).

## 4.2 언론의 상업주의와 생태학적 현상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또 다른 배경은 언론의 상업주의이다. 미국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이 새로운 뉴스 시장의 지배자로 부각되고 있고, 나라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 언론사의 유통망 지배력 상실은 공통적이다(Jae-Gook, 2018). 인터넷상의 각종 네트워크가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소규모 언론사와 개인이 상업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미디어 기술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나 경제와 같은 생태학적 현상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Wansoo, 2018; Yong-seok, 2017). 가짜뉴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사회적·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뉴스풍자, 뉴스패러디, 정치풍자, 사진조작, 프로파간다와 같은 허위뉴스는 집단 간 불신과 신뢰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Wansoo, Jaeyoung, 2015)도 있다.

가짜뉴스를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뉴스형식을 차용해 만들어낸 허위 또는 거짓정보로 정의(Sae-Wook, Se-Hoon, Ahran, 2017)하거나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Yong-seok, Oh-sung, 2017)로 정의하는 것도 가짜뉴스를 그 사회의 정치·경제와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Yong-seok(2017)은 가짜뉴스가 특정집단에 유리한(불리한) 정치경제적 지지(반대)나 행동,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집단 간에 벌어지는 이념적 대립과 극단적인 갈등은 가짜뉴스 증폭원

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 시비는 상당 부분 사실성의 여부가 아니라 정파성이나 이념성을 앞세우면서 발생한다(Gyu-Jae, 2018).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정보는 사실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Wansoo, 2018).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보다 쉽게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는 셈이다.

이렇듯 언론의 상업화와 정파성의 강화로 언론은 그들이 권력과 갖는 관계나 상업주의에 따라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양극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인다(Bharat, 2017). 상업주의적인 언론환경 역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4.3 확증편향과 여과거품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의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함께 뉴스소비자의 성향 즉,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과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알고리즘’ 문제도 자주 거론된다. 소셜미디어의 개인 맞춤형서비스로 발생하는 ‘여과거품(filter bubble)’ 의 결과 에코 챔버(echo chamber) 즉, 유사한 소리만 울리는 방에 갇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는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Gyu-Jae, 2018). 정치이념에 따른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은 확증편향과 ‘선택적인 노출(selective disclosure)’ 경향을 더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 가짜뉴스가 증폭되는 것이다(Spohr, 2017).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맞춤형 정보에 의해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 강화되는 여과 거품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Pariser, 2012). 즉, 자신의

주장과 맞는 정보만 따라 다니는 확증편향과 ‘여과거품’ 현상이 결합하면서 가짜뉴스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 5.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 5.1 정보조작대처법의 입법배경

프랑스에서는 형법을 비롯하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객체로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의 위력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초래한 피해를 경험하면서(Jungnyum, 2021) 정보조작대처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극도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특히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마크롱’ 을 표적으로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한편, 일부는 외국 언론매체에 의해 생산되는 등의 상황 속에서 당시 프랑스 법률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Jungnyum,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기존의 선거법전(Code éctoral)과 정보통신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제86-1067호)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이다(Seung-Pil, 2020).

공권력 확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프랑스가 입법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내 다수파인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 과 ‘민주노동당’ 의 중도연합은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허위정보 규제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하원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Rees, 2018; Min-Jeong, Jin., 2018).

## 5.2 정보조작대처법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법조항의 효력범위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특정기간을 제한하여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는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로 하여금 외국의 또는 외국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방송 통신매체들이 행하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Jungnyum, 2021).

또한 이 법의 규제대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허위정보 대처에 관한 통상법을 강화해서 선거캠페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과 SNS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허위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판사가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선거를 방해 또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정보, 언론이 보도여부와 관계없이 시사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Min-Jeong, Kim., 2019; Min-Jeong, Jin., 2018).

그러나 프랑스의 좌·우파 정치세력과 대다수 언론사와 언론학자, 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적용이 불가능하고, 모호하고 비효율적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Min-Jeong, Jin., 2018). 이 법을 둘러싼 프랑스 내에서의 논쟁과 논란은 가짜뉴스 규제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 크다. 정보조작대처법 관련 여러 문헌들(NextInpact, 2018; Le Monde, 2018; Le Nouvel Observateur, 2018; Rees, 2018)에서 드러나는 주요 논란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의 <Tab. 1-1>과 같다.

Tab. 1-1.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에서 쟁점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

쟁점	주요 내용
1. 허위정보 정의의 모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정보’ 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 적용의 모호성</li> <li>▪ 검열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로 인해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li> </ul>
2. 허위정보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정보가 공표된 경우, 허위정보와 관련해 판사는 48시간 안에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사의 전문성에 회의)</li> </ul>
3. CSA(시청각 감독위원회)의 권한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은 CSA에 새로운 권한, 즉, “외국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TV방송이 프랑스국가의 근본적인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 이들의 중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권한 자체가 모호하고 “영향력”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음</li> <li>▪ 국가 간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li> </ul>
4. ‘정보와 플랫폼의 투명성에 대한 의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를 위협</li> <li>▪ 자유보장의 기존 법률과 상충</li> </ul>
5. 이미 존재하는 허위정보 관련법과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존재하는 관련 법안의 ‘허위정보’, ‘가짜뉴스’ 에 대한 대처 가능성</li> </ul>

## 6.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

### 6.1 입법 논의의 한계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증대하고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려면, 우선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Min-Jeong, Kim(2019)은 국내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expression)’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명확성의 원칙이 필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1인미디어처럼 누구나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형식이나 외양을 기존 언론사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개연성이 충분하다(Sung-Ki, 2018).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뉴스를 사실의 거짓과 참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한계도 지닌다(Wansoo, 2018).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법률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론보도’라는 개념의 모호성도 자주 지적된다.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언론이 보도한 뉴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짜뉴스에서 언론보도라는 요건 자체가 법률적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Sung-Ki, 2018).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제정법으로서 가짜뉴스를 다룬 것은 두 개이다. 하나는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안이며, 다른 하나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자가 조직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후자는 행위규제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고, 제출된 각 법안들은 나름의 구성요건으로서 개념적 표지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eung-Pil, 2020). 두 개의 법안에서 제시하는 가짜뉴스의 요소는 목적으로서의 특정한 이익, 내용으로서의 허구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언론 또는 언론의 형식을 담고 있다.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Gwang-On, 2018)에서는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Hyo-Sang, 2018) 제23조 제1호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도구로 하여 가짜뉴스를 작성한 자가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작성자에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결과가 명확히 드러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에 처음 가짜뉴스를 작성한 자와 그것을 유포한 자, 유포된 것을 읽고 다른 자에게 재전달한 자 등의 관계가 실시간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도는 상황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로 인해 가짜뉴스와 가짜



가 아닌 뉴스 사이의 구별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은 상당부분 아주 공격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며, 혐오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현상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의사형성에 대한 거짓정보의 영향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도 없다(Jungnyum, 2018)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6.2 가짜뉴스 규제와 표현의 자유

우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저마다의 인식, 결코 모두가 동일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통제받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다양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포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Ju-Hyun, 2019).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즉,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전달되는 특정정보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Seung-Pil, 2020).

## 7. 결론

본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면, 가짜뉴스는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표현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헌법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자유 규제에 그치고 있으며, 공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취재 당시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을 경우 가짜뉴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Sae-Wook, Se-Hoon, Ahran, 2017). 기자가 사실로 인지하고 보도한 내용이 추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오보’는 가짜뉴스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실’이다(Wansoo, 2018). 일부는 진짜이고, 일부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진실성 못지않게 의도성이 중요하다. Allcott 와 Gentzkow(2017)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조작된 잘못된 뉴스 기사”로 정의하는 것도 의도성을 갖고 실제 뉴스처럼 보이도록 허위적으로 조작했는가 하는 지점이다. Min-Jeong, Kim(2019)도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위조작정보는 법적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보도를 살펴본 Ju-Hyun(2019)의 연구에서도 가짜뉴스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가짜뉴스가 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사회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까지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해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흐름에서 법적규제 등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지목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온라인 공간은 이미 과거에 비해 많은 제약이 생겨났다. Kyungrag, Seon-Gi(2010)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했던 각종 인터넷 규제들이 청소년보호나 유해사이트 차단 등의 취지를 넘어 비판적 콘텐츠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의견 표출에 제약이 많아진 것이다(Ju-Hyun, 2019). 온라인 공간은 거짓 루머나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반된 담론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Allan, 2006) 특징이 있다. 인터넷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incubator)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Uscinski, 2017). 즉, 온라인이라는 개방된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올바른 정보가 선택될 수 있다.

지금의 누구나 뉴스를 손쉽게 만들어내고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어렵다. 그렇기에 가짜뉴스를 제도적·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규제한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도 쉽지 않은 것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듯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뉴스를 어느 누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정할 것인가? 결국 가짜뉴스를 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통제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다수의 학자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EU 집행위원회의 HLEG 보고서는 ①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 ②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③이용자와 언론이 허위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마련, ④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 보장, ⑤허위정보의 영향력과 조치에 대한 지속적 연구장려를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진짜 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가짜뉴스에 대한 뉴스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수용자의 신뢰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

1. Ahnan, Park. (2019). A Critical Perspective on Regulating ‘Fake News’ & Disinformation, *Journal Communication Research*, Vol.56, No.2, pp.113-155. (박아란 (2019).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 (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 연구, 56권 2호, 113-155)
2. Allan, S. (2006). *Online news Journalism and the Internet*. UK: Open University Press. (한국언론재단 (편역) (2008). *온라인 뉴스: 저널리즘의 신세계*, 서울, 한국언론재단)
3.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31, No.2, pp.211-36.
4. Andrea, M. (2016). Aesthetics of Fake. An Overview. *Aesthesis* Vol.9, No.2, p.59.
5. Bendall, M. J., & Robertson, C. (2018). The crisis of democratic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 Cultural Politics*, Vol.14, No.3, .383-391
6. Bharat, N. Anand. (2017). Are Much Bigger than Fake News and Filter Bubbles. *Harvard Business Review*. Vol.2, No.10.
7. Chang-geun, Hwang. (2017). Legal measures to combat fake news, *Media intervention*.(황창근(2017).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언론중재*, 봄호, 26-37.)
8. Euisun, Yoo. (2018).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al legal interest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17(2),39-68.(유의선(2018).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언론과 법*, 17(2), 39-68)
9. Gap-Un, Han. (2017).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Fake News,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w*, Vol.8, No.1, .59-90.(한갑운(2017). 가짜뉴스의 규율 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59-90.)
10. Hong-Kyu, Choi. (2017). Fake news-related issues and Facebook and Gugul’s countermeasures, *Kisa Report*, Vol.2.(최홍규(2017). 가짜뉴스 관련 논점과 페이스북·구글의 대응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Vol.2.)
11. Hyo-Sang, Gang. (2018). 강효상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5.
12. Il-Seok, OH., Seong-Woo Ji., Woon-Gab, Jeong. (2018). A Normative Study on Fake New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Vol.29, No.1, pp.157-193. (오일석, 지성우, 정운갑(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권 1호, 157-193)
13. Jae-Gook, Lee. (2018). The harmful effects of fake news and the background of the regulatory controversy, *Kwanhun Journal*, Vol.60, No.4, 11-17. (이재국(2018). 가짜뉴스의 폐해와 규제 논란의 배경, *관훈저널*, 60(4), 11-17.)
14. Jong-seob, Im. *Media Crisis and Fake News Wave - There are no fakes in the news*, *Kwanhun Journal*.(임종섭, 2017). 언론의 위기와 가짜뉴스 파동-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봄호, 90-92.)
15. Ju-Hyun, Kang. (2019). The Attributes of Fake News Discourse and the Direction of Social Practice in Media Reports, Vol.63, No.6, pp.7-64. (강주현(2019).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적 실천 방향, *한국언론학보*, 63(6), 7-64)
16. June-Woong, Rhee. (2017). Fake news and fact-checked reporting, *Kwanhun Journal*, Vol.143, pp.33-40.(이준웅(2017). 가짜 뉴스와 사실확인 보도, *관훈저널*, 143, 33-40.)
17. Jungnyum, Lee. (2018). Legal issues regarding regulation of fake news on the Internet, *BUP JO*, Vol.67, No.5, pp.392-428(이정님, 인터넷 가짜뉴스 (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 67(5), 392-428)
18. Jungnyum, Lee. (2021). Research on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alysis of French legislation examples. *Sogang Law Journal*, Vol.10, No.1, pp.129-152.(이정님(2021).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 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서강법률논총*, 10(1), 129-152)
19. Jung-Yoon, Yum., Se-Hoon, Jeong. (2018). Research on fake news perception and fact-checking effect - Role of prior-belief consistency.*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62, No.2, pp.41-80. (염정윤, 정세훈(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62(2), 41-80)
20. Jung-Yoon, Yum., Se-Hoon, Jeong. (2019). Predictors of fake news exposure and sharing personality, new media literacy, and motives, Vol.63, No.1, pp.7-45. (염정윤, 정세훈(2019).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63(1), 7-45)
21. Klein, D., & Wueller, J. (2017), *Fake news: A leg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et Law*, Vol.20, No.10, pp.5-13.
22. Kwang-On, Park. (2018). 박광온 국회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2927.
23. Kyunrag Lee, Seon-Gi Baek. (2010). A Critical Study on the Policy of Regulating Internet Contents: Focusing on the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of Social Media, Vol.72, pp. 166-193. (이경락, 백선기(2010).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72, 166-193)
  24. Min-Jeong, Jin. (2018). French media law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Overseas Media Law Research Report, Vol.2-02, pp.133-170.(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제2호-02, 133-170.)
  25. Min-jeong, Kim. (2019). From “fake news” to “disinformation”, Vol.5, No.2, pp.43-81.(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2), 43-81)
  26. Pariser, Eli. (2012).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Penguin Books.
  27. Rees, M. (2018). Loi anti-fake news: l’Asic interroge la Commission européenne et la CNIL.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2호(2018))
  28. Sae-Wook, OH, Se-Hoon, Jeong, Ahran, Park. (2017).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ake news, Korea foundation reserch.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2017), 가짜뉴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9. Se-Hoon, Jeong.(2018).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and issues, Kwanhun Journal, Vol.61,No.1,76-82(정세훈(2018). 가짜뉴스의 대응방안 및 쟁점. 관훈저널, 60(1), 76-82.)
  30. Seung-Pil, Choi. .Review of regulatory laws on fake news- with focus on mass media law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2020, Public Law Journal, Vol.21, No.1, 115-147. (최승필(2020).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1(1), 115-147)
  31. Spohr, D. (2017).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Vol.34, No.3, 150-160.
  32. Sung-Ki, Hwang. (2018). The problem of legal regulation on fake news, Kwanhun Journal, Vol.60, No.1, .83-91.(황성기(2018).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 관훈저널, 60(1), 83-91.)
  33. Sung-Oak, Yun. (2018).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Vol.17, No.1, 51-84.(윤성옥(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법, 17권 1호, 51-84)
  34. Sun-Ho, KIM. (2018). Media literacy in an era where the truth is hidden, MEDIA & EDUCATION, Vol.8, No.2, 204-221.(김선호(2018).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와 교육>, 8권 2호, 204-221)
  35. Uscinski, Joseph E. (2017). Fake News Freak out Are Internet Conspiracy Theories Ruining America?, Reason. March: 55-59.
  36. Wansoo, Lee. (2018). What is Fake News?: A Multidimensional Discussion of Fake News Concepts and Scopes, Vol.4, No.2, 173-214. (이완수(2018).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4(2), 173-214)
  37. Wansoo, Lee. Jaeyoung, Bae. (2015). News Reporting Mechanism on Economy Rumor,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10, No.1, .117-156. (이완수, 배재영(2015). 경제루머의 보도기제: 미네르바 루머의 메시지에 대한 언론의 재구성 과 재해석, 국정관리연구, 10권 1호, 117-156)
  38. Yong-seok, Hwang., Oh-sung, Kwon. (2017). A study on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the means of regulation, Journal and Law, Vol.16, No.1, 53-101.(황용석·권오성(2017). 가짜뉴스의 개념과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16권 1호, 53-101.)



**Kwak, Sun Hye (sunhye.kwak@halla.ac.kr)**

Kwak, Sun Hy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Video communication at Halla University. She received a Ph.D. in journalism from Kyung Hee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planning and promoting social and realistic media digital content. Her doctoral thesis was a study on self-expression and relationship-building strategies using SNS.



**Lee, Sung Wook (leesw@halla.ac.kr)**

Lee, Sung Wook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Video Production department in the Halla University.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Audiovisual development from University of Paris1.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edia phenomenology, history of communication, visual aesthetics.

#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Focusing on the French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Sunhye Kwak\* · Sungwook Lee\*\*

## ABSTRACT

This study began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domestic media reporting on ‘fake news’ regulations that frequently appear through the French ‘Les proposals de loi control de l’information’ case, while still approaching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perspectives on where to see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the answer to what the media is, what the news is, and who the reporter i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reviewing the long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spread of fake news examin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uld not determine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punished, regulated, controlled, or judged simply by one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set by the law, we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In addition, ‘online’ space is a place where fake news is generated and spread,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plenty of room to act as an antidote. In the end, the only alternative to the damage of long-term fake news will be to create a media environment that allows more high-quality "real news" to pour out, allowing us to develop our ability to judge reliable information through balanced competition among various news in the free market of ideas.

*Keywords: Fake News,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Social Network Service,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

\* Assistant Professor of Video communication at Halla University, First Author, sunhye.kwak@halla.ac.kr

\*\* Assistant Professor of Video communication at Hall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leesw@halla.ac.kr